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검 토 보 고

〈우정자원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전달 추진 체계 마련 등〉  
■ 이정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870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                                    | 3  |
| 1. 우정자원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전달 추진체계 마련 .....                 | 3  |
| 2. 우정사업의 기계화 등 특정 용도에 한해 이익잉여금의 다른 특별회계 전출 허용 ..... | 15 |
| ※ 참고자료 .....                                        | 20 |
| 1. 우체국예금 이익잉여금 현황 및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규모 ..                | 20 |
| 2. 우편사업 인프라 투자 필요 사례 .....                          | 21 |

##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정현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5. 11. 3.

다. 회부연월일 : 2025. 11. 4.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정사업본부는 복지우편, 디지털배움터 등 우정사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는 공공사업을 협의할 수 있는 공식 추진체계 없이 지역 우체국과 지방자치단체 간 개별 이용 계약을 통해 이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어 전국적인 확산이 더디고, 지역마다 달리 제공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우정사업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고 공공서비스의 적시 제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공공사업의 발굴부터 집행까지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보편적 우정서비스 및 공적 역할을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인프라 투자가 불가결하나, 우편사업 경영 환경 악화로 우편사업 적자는 꾸준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임. 현행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이익금을 활용하여 우편사업의 결손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우체국예금의 이익금만으로 우편사업의 손실을 보전하고 우정사업의 필수 인프라 투자 재원까지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한편, 우체국예금이 2004년부터 출연해오던 공적자금상환기금의 근거

법인 「공적자금상환기금법」이 2027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임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하던 재원을 우정사업을 위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우정사업의 지속가능성 및 공공성을 유지하고 우체국의 공적 역할을 확대해나가기 위해 우정사업의 필수 인프라 투자에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재원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우정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정사업의 정의를 공공서비스의 대행 및 수탁까지 확대하여 공적 역할을 명확화하고, 우체국예금이 당해 연도의 이익금 전출을 통한 우편사업 결손보전에서 더 나아가 이익잉여금을 우정사업의 필수 인프라 투자재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바목, 제14조의2제3항 및 제17조의3 신설).

### Ⅲ. 검토의견

#### 1. 우정자원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전달 추진체계 마련

##### 가.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우정사업의 정의에 공공서비스의 수요조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수탁을 추가하여 공적 역할을 명확화하고, (안 제2조제1호바목 신설)
- 우정자원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전달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이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사항과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근거 등을 규정함(안 제17조의3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우정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br>가. ~ 마. (생략)<br><u>&lt;신설&gt;</u> | 제2조(정의) -----<br>-----.<br>1. -----<br>-----.<br>가. ~ 마. (현행과 같음)<br>바. <u>공공서비스(복지 및 환경 분야 등의 대국민 서비스 중 행정기관 등이 업무를 대행시키거나 위탁하여 우체국망을 이용함으로써 국민편익 및 공공복리가 증</u> |

바. ~ 차. (생략)

2. (생략)

<신설>

진되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요조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수탁

사. ~ 카. (현행 바목부터 차목까지와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의 구축·운영) ①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2조제1호바목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정자원을 활용한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1. 공공서비스의 수요조사 및 집행에 관한 업무의 대행 및 수탁 현황
2. 우정시설 등 우정자원에 관한 정보
3. 우정자원의 공공서비스 활용 지원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항

③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공공서비스 활성화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플랫폼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나. 검토사항

### □ 우정자원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추진 현황

- 우정사업은 크게 우편사업, 예금사업, 보험사업의 3개 부문을 중심으로 영위되어 왔고, 이에 더하여 우정사업본부는 2023년 신규사업 영역으로써 전국의 우체국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한 공익형 수익사업의 발굴·확대를 주요 추진과제로 선정한 바 있음.<sup>1)</sup>
- 그 일환으로 우정사업본부는 2022년 일부 지자체에서의 복지우편 서비스<sup>2)</sup>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점차 공공서비스 전달 사업을 확대해가고 있으며, 2025년 12월 현재 정부, 지자체 및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4개 분야 14개 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중임.

#### < 우정사업본부 공공서비스 사업 추진 현황 >

| 사업 분야   | 사업명          | 시행 연도 | 협약·계약 기관                      | 주요내용                                                                                                                                                                           |
|---------|--------------|-------|-------------------------------|--------------------------------------------------------------------------------------------------------------------------------------------------------------------------------|
| ① 환경 분야 | 폐의약품 회수사업    | '23년  | 기후부<br>지자체<br>(25.12월 기준 64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약품 오·남용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우편 물류를 활용하여 폐의약품 회수</li> <li>○ ①봉투에 밀봉하여 우체통에 투함한 폐의약품과 ②약국주민센터 등에 비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을 우체국에서 회수하여 지정 장소로 배달</li> </ul> |
|         | 커피캡슐 회수사업    | '24년  | 기후부<br>동서식품<br>네스프레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회용 커피캡슐(알루미늄)을 일반통상 우편물로 우체통 및 우체국창구를 통해 회수</li> <li>○ 소비자가 사용한 커피캡슐을 우편회수봉투에 담아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 창구에 제출</li> </ul>                      |
|         | 음료매장 다회용컵 회수 | '24년  | 기후부<br>행복커넥트<br>더그리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세종청사 음료매장에서 사용한 다회용 컵 회수, 세척업체로 배송, 배송하면서 세척한 새 컵을 싣고 와서 다시 음료매장에 배달</li> </ul>                                                     |

1) 우정사업본부,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기본계획[2023~2025]』 (2023), 46p

2) 복지사각지대 의심가구에 복지정보가 담긴 우편물을 배달하고, 복지기관에는 필요한 기초정보를 수집하여 전달하는 우편 서비스

| 사업 분야   | 사업명                    | 시행 연도 | 협약·계약 기관                      | 주요내용                                                                                                                                                                                                   |
|---------|------------------------|-------|-------------------------------|--------------------------------------------------------------------------------------------------------------------------------------------------------------------------------------------------------|
|         | 복합재질 포장용기 회수           | '25년  | 기후부<br>(주)도즈랩<br>스킨100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활용이 어려운 복합재질 포장재(공병)를 우편제도를 활용하여 회수</li> <li>○ 소비자가 사용한 제품의 용기를 우편회수봉투에 담아 우체통에 넣거나 우체국 창구에 제출</li> </ul>                                                    |
| ② 복지 분야 | 복지우편 서비스               | '22년  | 지자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체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복지사각 지대 발굴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우편제도</li> <li>○ 복지사각지대 발굴 체크리스트, 치매환자·자립준비청년 실태 조사, 화재 위험요인 확인 등 다양한 용도의 복지우편 발송 중</li> </ul>                           |
|         | 안부살핌 소포                | '24년  | 행안부<br>지자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 고립가구를 집배원이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안부 확인, 집배원이 해당가구에 생필품을 배송하면서 파악한 위기정보를 지자체에 전달</li> </ul>                                                                           |
|         | 에너지 바우처 등기             | '24년  | 한국에너지공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에너지복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대상임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 바우처 사용률이 저조한 가구 발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li> </ul>                                                                        |
|         | 문화누리 복지우편              | '25년  | 한국문화예술 위원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누리 바우처 사용자를 대상으로 오프라인 사용처 안내 등을 통해 바우처 사용률 제고</li> <li>○ 청양·장수·화천군 2,000가구 시범운영('25.9월)</li> </ul>                                                          |
|         | 복지 지원금 현금배달            | '25년  | 경남 4개군<br>(산청·거창·함양·합천군 시범운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구 감소지역의 거동이 불편하거나 금융 기관과 거리가 멀어 현금인출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각종 복지 지원금을 집배원이 현금으로 배달하는 서비스</li> </ul>                                                                |
| ③ 안전 분야 | 가스안전 우편 서비스            | '23년  | 한국가스 안전공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서지역 주민들은 LP가스를 주 연료로 사용 중이나 원격지인 관계로 에너지 안전 점검·관리에 취약, 집배원이 가스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공</li> <li>○ '23년 전남 도서(시범) → '24년 전국 도서 → '25년 산간지역으로 발송 확대</li> </ul> |
|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서류 접수 대행 | '23년  | 건설근로자 공제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용 건설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공제금이 대상자의 인지 부족 등으로 미 청구 건 증가, 집배원이 퇴직공제금 신청 대행</li> </ul>                                                                           |
|         | 부정·불량 식품 화수            | '24년  | 식품안전정보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체국소포를 활용하여 부정·불량식품 조사 업무 체계화</li> <li>○ 신고자가 개별 발송하던 조사 의뢰 소포를 신고와 동시에 우체국에서 픽업, 조사기관에 착불소포 배송(신고자의 택배사 선택 불요, 자동 정산)</li> </ul>                             |

| 사업 분야      | 사업명                 | 시행 연도 | 협약·계약 기관 | 주요내용                                                                                                                                                             |
|------------|---------------------|-------|----------|------------------------------------------------------------------------------------------------------------------------------------------------------------------|
| ④ 행정 지원 분야 | 빈집 확인<br>등기 서비스     | '25년  | 한국부동산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하는 빈집실태 조사에 집배원을 활용하여 빈집 사전 확인 업무 수행(체크리스트 작성·사진 촬영)</li> <li>○ 경기광주시·김천시 빈집 의심 주택 시범 운영('25.12월)</li> </ul> |
|            | 도서<br>상호대차<br>우편서비스 | '25년  | 세종시립도서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달과 접수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우체국 물류망의 장점을 활용하여 세종시립도서관 도서 상호대차에 우편서비스 활용('25.12월)</li> </ul>                                    |

\* 자료: 우정사업본부, 2025.12.

- 우정사업본부에서 발표한 『2026년도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시행계획』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2026년에도 빈집실태 조사 대상지역 확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업무 일부 대행, 전자담배 디바이스 등 회수물류 서비스 대상 품목 추가발굴 등 공공서비스 수행 영역 확대를 도모하고 있음.<sup>3)</sup>

## □ 우정사업의 정의에 공공서비스 명문화

- 개정안은 우정사업의 정의<sup>4)</sup>에 포함되는 사업으로 바목 공공서

3) 우정사업본부, 『2026년 우정사업 경영합리화 시행계획』 (2025), 9p

4)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정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우편  
나. 우편환  
다. 우편대체  
라. 우체국예금  
마. 우체국보험  
바.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수입인지의 판매  
사. 「외국환거래법」 제8조에 따른 외국환업무  
아.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른 전자자금이체업무, 직불 및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전자지급결제대행 등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투자매

비스 관련 업무의 대행 및 수탁을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있고, 공공서비스를 “복지 및 환경 분야 등의 대국민 서비스 중 행정기관 등이 업무를 대행시키거나 위탁하여 우체국망을 이용함으로써 국민편익 및 공공복리가 증진되는 사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로 정의함.

- 이는 복지 및 환경 분야 등의 대국민 서비스의 수행에 우체국망을 활용하여 우정사업 조직이 범정부 차원의 공공서비스 전달을 대행하는 역할을 공식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현행법령에서는 우정사업에 해당하는 부대사업으로 동법 시행령 제2조제7호5)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이나 타인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서비스의 수탁·대행도 우정사업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법률에 직접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공공서비스 전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개정안은 공공서비스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우체국망을 활용하는 서비스를 시행령으로 열거하려는 취지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

---

매업, 투자중개업

차.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5)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부대사업의 범위)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7. 다른 행정기관이나 타인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

○ 그런데 개정안에서 공공서비스 업무의 대행 및 수탁을 우정사업에 포함시킨 취지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범주의 공공서비스를 우정 인프라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고,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서비스에 포함되는 것만으로 우정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서비스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협약을 맺은 후 비로소 우정사업으로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됨.

이를 고려하면 공공서비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특정하여 정하게 되면 오히려 범위를 한정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음에도 이를 구체화하여 정할 사유가 있는지와 법률 규정을 구체화하여 보완할 수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임.<sup>6)</sup>

## □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의 구축·운영 근거 마련

○ 현행 체계에서 우정사업 조직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전달은 지역 우체국과 지방자치단체 간 개별 계약을 통해 수행되고 있어 전국적인 확산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우정사업 조직에서 수행하는 공공서비스 현황, 지원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여 수요기관 홍보·서비스 확대에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임.

---

6) 우정사업본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를 “복지·안전·환경·주거·교통·교육·보건의료·문화·정보통신 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음.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우정사업본부장)<sup>7)</sup>이 공공서비스전달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고 플랫폼을 통해 공공서비스 수탁·대행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한다면, 사업 추진력과 수요기관 접근성을 높여 우정자원(우체국 인력, 시설 등)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전달 추진체계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임.
- 특히, 중소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유출로 인하여 지자체 인력과 예산이 줄어드는 한편<sup>8)</sup>, 고령화·양극화로 복지수요는 급증하여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될 우려가 높은바, 전국적으로 조성된 우체국 인프라를 통한 공공서비스 전달 체계의 의미가 클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개정안 제17조의3제4항은 플랫폼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우정사업본부 수행 공공서비스 중 민간 기업 등과 협업하는 사례가 있음을 고려하여, 요청 대상으로 법인 등이 포함될 수 있음을 명

7)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우정사업총괄기관(이하 “우정사업본부”라 한다)에 소속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재정경제부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공무원 각 1명으로 한다.

8) ·하위 20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7.6%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2025년)  
·전국 229개 시군구 중 62개 지자체(27.1%)가 소멸위험지역(이상호, 「지방소멸 2025: 신분류체계와 유형별 정책과제」, 『지역산업과 고용』, 한국고용정보원, 2025.9., 108p)이고, 89개 지자체(38.9%)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변경 고시」, 2024. 2. 27. 시행)

확히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자  
구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현행법 제17조(우정사업의 위탁), 제17조의2(우정사업의 연구  
개발)<sup>9)</sup>에도 행위 대상으로 기관 또는 단체를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개정안 제17조의3제4항에서는 자료제출 요청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26년 2월 현재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  
규칙」은 제정되지 않은 상황임.

○ 개정안이 하위 법령에 위임할 사항은 특정되지 않으나 유사 입  
법례<sup>10)</sup>를 고려하면 자료제출 절차 등이 규정될 것으로 보이는  
바, 법령 입안의 기본 원칙상 단순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부  
령으로 정하는게 타당할 것임.<sup>11)</sup> 그러나, 동법 시행규칙(부령)이  
제정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시행령으로 규정하는 방안도 입법

9)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우정사업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사업개발, 물류지원, 시설관리 및 우편사  
업진흥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의2(우정사업의 연구개발)**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촉진  
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10)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데이터 플랫폼  
의 구축·운영)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플랫폼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행  
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  
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데이터  
플랫폼의 구축·운영)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같은 조 제1항  
에 따른 미래자동차 부품 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통해 해당 자료를 제출해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한 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  
경된 내용을 플랫폼에 반영해야 한다.

11)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 기준」, 2024, 16p

의 경제성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둘째, 개정안의 플랫폼은 우체국망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전달에 관한 정보제공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예산 지원 등과 같은 규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그런데, 복지우편 서비스와 같이 수요기관의 비용 부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서비스 수행 확대가 지체되는데 수요기관의 재정여건 부족<sup>12)</sup>이 주요 사유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산 조치가 함께 수반되지 않으면 플랫폼을 통한 공공서비스 확대 효과가 저해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는 ①지자체 재정·인력의 한계와 지방공동화로 정책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체국 <sup>4만여</sup>인력과 <sup>3,330개</sup>인프라를 공공서비스 전달 창구로 활용함으로써 정부 재정부담은 줄이고, 범부처 협력을 통해 취약 지역에도 균질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아울러 ②해외 우정(프랑스·일본 등)에도 우체국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입법을 통해 명문화하고 돌봄, 행정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는 점을 들어 동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

---

12)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전국평균 재정자립도 43.18%(예산 순계 기준,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

### <우체국 활용 시 지자체 등 재정절감 사례>

- **(복지우편)** 집배원이 28만 가구를 방문하여 33%인 10.3만여 가구를 복지 혜택과 연계(건당 4천원 불과)
- **(폐의약품 회수)** 세종시는 예산 92% 절감, 수거량 128% 증가 ⇨ 전국 확대시 약 300억원<sup>※</sup> 절감
- **(가스안전점검)** 가스공사가 직접 점검 32,893원 vs. 집배원 4,000원(개소당 점검비용 -87.8% 감소)

자료: 우정사업본부, 2025. 12.

### < 해외우정의 공공서비스 관련 입법 사례 >

- **(프랑스)** 우편법에서 La Poste(프랑스 우정)에게 공공서비스 의무 부여(법률 제2010-123호)  
→ 주요 우체국을 '공공서비스센터'로 활용하여 사회보험, 차량 등록, 노인돌봄 등 행정지원
- **(일본)** 특별조치법을 통해 우체국을 지역사회 인프라로 활용 ('05년 법률 제100호)  
→ 마이넘버카드(신분증 역할) 교부, 운전면허 갱신 증명서 교부 등을 우체국에서 수탁받아 처리

자료: 우정사업본부, 2025. 12.

## 2. 우정사업의 기계화 등 특정 용도에 한해 이익잉여금의 다른 특별회계 진출 허용

### 가.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정안은 우정사업의 기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특별회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3항 신설).

| 현행                                                   | 개정안                                                                                                                                             |
|------------------------------------------------------|-------------------------------------------------------------------------------------------------------------------------------------------------|
| 제14조의2(이익 및 손실의 처분)<br>①·② (생략)<br><u>&lt;신설&gt;</u> | 제14조의2(이익 및 손실의 처분)<br>①·② (현행과 같음)<br>③ <u>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익잉여금을 제2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른 특별회계에 진출할 수 있다.</u> |

### 나. 검토사항

#### ☐ 특정 용도에 한해 이익잉여금의 다른 특별회계 진출 허용

- 현행법령은 우편사업특별회계와 우체국예금특별회계에서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 이익잉여금 중에서 정리하되, 이익이 생긴 특별회계의 이익금을 다른 특별회계의 결손보전을 위해 전출할 수 있다고 규정함.

또한, 적립된 이익잉여금은 우정사업의 기계화·자동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sup>13)</sup>

○ 현행법 제14조의2는 제1항 단서에서만 예외적으로 결손 보전을 위한 이익금의 다른 특별회계 전출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밖의 경우 특정 특별회계의 이익잉여금은 해당 특별회계 내에서만 사용 가능함.

○ 그런데, 우편사업의 경우 시설·장비 노후화가 심화되고 있고<sup>14)</sup>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우편차량 전동화<sup>15)</sup>나 AX사업 등 인프라 투자 필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우편사업의 적자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어 이익잉여금을 적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계화를 비롯한 인프라 투자 재원 마련이 어려운 실정임.

---

13)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이익 및 손실의 처분) ① 우편사업특별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정부기업예산법」 제21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결손을 정리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정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생긴 특별회계의 이익금을 다른 특별회계의 결손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출할 수 있다.

② 우정사업총괄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우정사업의 기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의2(이익잉여금의 사용) ①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이익잉여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우정사업의 기계화·자동화를 위한 투자재원

2. 우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직접경비로서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재원

14) 우편 물류시설 중 수도권 7개 집중국은 평균 사용연수 25년 경과, 우편종별 구분장비 283대 중 206대(72.8%)가 내용연수 경과 (참고자료2 참조)

15)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정사업분부는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의 신규 도입 시 저공해자동차(전기·수소차)로 구매·임차 필요 (참고자료2 참조)

○ 반면,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우 매년 경영수지 흑자를 달성하고 있고 2024년 말 기준 4조 5,984억원의 누적 이익잉여금을 적립하며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음.

- 또한,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우체국예금은 매년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전년도 예금 평균 잔액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자금(2025년 기준 851억원)을 출연해왔는데, 해당 법률이 2027년 일몰 예정임에 따라 추가적인 여유 재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sup>16)</sup>

#### <연도별 우편 및 예금 경영수지 및 당기손익>

(단위 : 억원)

| 구분   |    | '11년   | ...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
| 경영수지 | 우편 | △439   |     | △1,450 | △1,115 | △1,239 | 559*   | 708*  | △1,572 | △1,659 | △3,116 |
|      | 예금 | 1,637  |     | 2,233  | 2,950  | 3,913  | 16,260 | 349   | 2,093  | 2,399  | 7,078  |
| 당기손익 | 우편 | △1,254 |     | △1,297 | △316   | △1,253 | 983    | 1,198 | △1,177 | △1,242 | △3,365 |
|      | 예금 | 1,263  |     | 1,649  | 2,393  | 3,133  | 15,755 | △166  | 1,435  | 1,837  | 5,787  |

\* 우편사업 '21~'22년은 선거우편, 요금인상(50원), 우편-금융간 공통비 배분 합리화로 일시적 흑자  
자료: 우정사업본부, 2025. 12.

○ 따라서 개정안은 재정 여건이 양호한 우체국예금의 누적 이익잉여금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의무 해제에 따른 여유재원을

#### 16)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5조(기금에의 출연) ④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매년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예금의 전년도 평균 잔액에 1천분의 3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그 금액이 1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10만원)을 기금에 출연하여야 한다.

법률 제6804호(2002.12.26.)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2027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제5조(기금에의 출연) ① 법 제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천분의 1을 말한다.

우편사업특별회계의 필수 인프라 투자재원으로 활용하려는 것으로, 우편사업의 취약한 재정 여건과 인프라 투자 필요성을 고려하면 그 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우체국예금 이용자의 예금자산을 바탕으로 형성된 자금이므로 일차적으로 예금자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우편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금 이익잉여금의 전출 확대가 타당할지 논의가 필요해 보임.
- 둘째, 개정안은 이익잉여금의 전출 근거를 신설하면서 용도를 제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요건으로 규정하였으나, 전출의 규모는 제한하지 않고 있음.
- 만약 우체국예금 이익잉여금의 우편사업 전출 규모가 해당 회계연도 이익잉여금 적립액을 상회하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독립성과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sup>17)</sup>
- 우정사업 회계의 전출과 관련한 기존 규정을 살펴보면, 현행법 제14조의2제1항 단서에서 결손보전을 위한 전출은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이익금의 규모가 전출의 한계로 설정되고, 우체국예금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은 전년도 예금 평균잔액의 1천분의 1로 그 규모가 법령에 따라 정해져 있음.

---

17) 이에 대하여, 우정사업본부는 이익잉여금의 다른 특별회계 전출은 매 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 예산당국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고, 우정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통제장치가 존재하며, 규모를 제한하게 되면 인프라 투자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셋째, 제14조의2제3항을 신설하는 개정안과 제14조의2제2항의 규정은 이익잉여금을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금의 누적 적립액이라는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과 달리 현행법 제14조의2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이익잉여금”으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음.
- 같은 조항에서 용어의 표현이 다르게 사용되어 해석상 혼동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법문 표현의 통일성과 명확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용어를 일치시키는 자구 수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는 보편적 서비스 및 공공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해 기계화·AX 등 효율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나 우편사업특별회계 재원 부족으로 인프라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7년 1분기로 예정된 공적자금상환기금 납부 의무기간 종료 후 유휴재원이 발생하는 우체국 예금의 이익잉여금 일부를 우편 인프라 투자에 활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 개정안에 동의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35

## [참고자료 1] 우체국예금 이익잉여금 현황 및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규모

### □ 우체국예금 이익잉여금 현황

- (구 성) 2007년 우편과 예금사업의 회계분리 시 예특회계로 구분된 이익잉여금(1.76조원)과 이후 매 회계연도의 당기손익에서 타회계(일반/우특) 전출금을 차감한 금액의 누적액으로 구성

#### < 연도별 예특 이익잉여금 적립 현황 >

(단위: 억 원)

| 구 분                |       | 2007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
| 처분전<br>이익<br>잉여금   | 전기이월  | 17,621 | 18,376 | 17,909 | 18,018 | 20,326 | 20,889 | 21,695 | 21,592 | 22,787 |
|                    | 당기손익  | 1,106  | 281    | 390    | 2,698  | 1,263  | 1,906  | 1,393  | 1,195  | 1,473  |
|                    | 소계(a) | 18,727 | 18,657 | 18,299 | 20,716 | 21,589 | 22,795 | 23,088 | 22,787 | 24,260 |
| 처분*<br>(타회계<br>전출) | 일반회계  | 351    | 748    | 281    | 390    | 700    | 634    | 1,302  | -      | 466    |
|                    | 우특회계  | -      | -      | -      | -      | -      | 466    | 194    | -      | 210    |
|                    | 소계(b) | 351    | 748    | 281    | 390    | 700    | 1,100  | 1,496  | -      | 676    |
| 이익잉여금(a-b)         |       | 18,376 | 17,909 | 18,018 | 20,326 | 20,889 | 21,695 | 21,592 | 22,787 | 23,584 |

| 구 분                |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합계     |
|--------------------|-------|--------|--------|--------|--------|--------|--------|--------|--------|--------|--------|
| 처분전<br>이익<br>잉여금   | 전기이월  | 23,584 | 24,336 | 24,893 | 25,690 | 26,736 | 29,553 | 44,055 | 43,889 | 45,324 |        |
|                    | 당기손익  | 1,502  | 2,059  | 1,649  | 2,393  | 3,133  | 15,755 | △ 166  | 1,435  | 1,837  | 41,302 |
|                    | 소계(a) | 25,086 | 26,395 | 26,542 | 28,083 | 29,869 | 45,308 | 43,889 | 45,324 | 47,161 | 41,302 |
| 처분*<br>(타회계<br>전출) | 일반회계  | 243    | 500    | 500    | 50     | -      | -      | -      | -      | -      | 6,165  |
|                    | 우특회계  | 507    | 1,002  | 352    | 1,297  | 316    | 1,253  | -      | -      | 1,177  | 6,774  |
|                    | 소계(b) | 750    | 1,502  | 852    | 1,347  | 316    | 1,253  | -      | -      | 1,177  | 12,939 |
| 이익잉여금(a-b)         |       | 24,336 | 24,893 | 25,690 | 26,736 | 29,553 | 44,055 | 43,889 | 45,324 | 45,984 |        |

※ 24년말 이익잉여금 45,984억원 = 회계분리 시 잉여금 17,621억원 + 당기손익누계 41,302억원 - 총 일반회계전출 6,165억원 - 총 우특회계전출 6,774억원

자료: 우정사업본부

### □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규모

#### < 연도별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규모 >

(단위 : 억 원)

| 연도 | '04~<br>'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소계     | '26~<br>'27e | 계      |
|----|-------------|-----|-----|-----|-----|-----|-----|-----|-----|-----|-------|-------|-------|-------|-------|-------|--------|--------------|--------|
| 예금 | 2,418       | 445 | 561 | 598 | 594 | 576 | 585 | 590 | 608 | 676 | 740   | 767   | 769   | 798   | 820   | 851   | 12,397 | 1,817        | 14,214 |
| 보험 | 924         | 215 | 205 | 231 | 257 | 254 | 257 | 261 | 273 | 285 | 294   | 301   | 306   | 309   | 309   | 310   | 4,991  | 749          | 5,740  |
| 계  | 3,342       | 660 | 766 | 829 | 851 | 830 | 842 | 851 | 881 | 961 | 1,034 | 1,068 | 1,075 | 1,107 | 1,129 | 1,161 | 17,388 | 2,566        | 19,954 |

자료: 우정사업본부

## [참고자료 2] 우편사업 인프라 투자 필요 사례

### □ 물류 인프라(물류시설+구분장비) 투자 필요

○ (투자 필요 인프라) 물류시설(우편집중국·물류센터) 신축 및 재건축, 노후 우편 구분장비(소포·일반통상·등기통상·집배순로) 교체

- 특히 동서울\*·수원집 등 수도권 7개 집중국은 평균 사용연수가 25년이 경과된 노후 물류시설로 재건축 시점\*\*이 임박·밀집

\* 특히 동서울 집중국은 현재 전국 소포 처리물량의 10%를 점유하는 대형 물류시설로 '96년 개국하여 '30년 이전 재건축 필요(3~4년 소요되는 재건축 공사기간 고려)

\*\* 건립 35년 도래 시 노후화 정도, 안전진단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재건축 진행

< 우편집중국(물류센터) 건립 현황(27국) >

| 건립           | '96년 | '99년                       | '00년           | '02년                       | '06년 | '07년           | '12년     | '20년               |
|--------------|------|----------------------------|----------------|----------------------------|------|----------------|----------|--------------------|
| 수도권<br>(10국) | 동서울  | 수원                         | 부천<br>의정부      | 안양<br>고양<br>성남             | 동서울  |                | 부평<br>안양 |                    |
| 지방권<br>(17국) |      | 대전<br>청주<br>광주<br>대구<br>원주 | 부산<br>전주<br>제주 | 창원<br>진주<br>순천<br>안동<br>강릉 |      | 울산<br>영암<br>포항 |          | 중부권 <sup>IMC</sup> |
| 소계           | 1국   | 6국                         | 5국             | 8국                         | 1국   | 3국             | 2국       | 1국                 |
| 35년<br>도래시점  | '31년 | '34년                       | '35년           | '37년                       | '41년 | '42년           | '47년     | '55년               |

- 또한, 현재 운용 중인 우편종별 구분장비(총 266대) 중 내용연수 10년 경과 장비가 179대(67.3%)에 달하여 장비 교체가 시급한 실정

< 우편종별 구분장비 현황 (단위: 대) >

| 구분      | 소포 | 대형통상 | 일반통상 | 등기통상 | 집배순로 | 합계          |
|---------|----|------|------|------|------|-------------|
| 장비      | 36 | 9    | 40   | 7    | 174  | 266         |
| 내용연수 경과 | 16 | 5    | 36   | 5    | 117  | 179 (67.3%) |

## □ 예상 소요 자원 : 총 7,305억 원 ('26 ~ '38년)

### ① (우편종별 노후 구분장비 교체) 약 2,113억 원

- 현 시점 내용연수 10년이 경과된 소포 구분장비 16대, 통상우편 구분장비 163대\*를 신규 장비로 교체하기 위한 비용\*\*으로 계산

\* 전체 소포 구분장비 36대 중 44.4% 통상 구분장비 230대 중 70.8%로, 그간 성장하는 소포사업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중심의 노후 소포구분기 교체에 예산을 집중해와 통상 구분장비의 내용연수 경과비중이 더 높은 상황

\*\* (소포) 800억(16대×50억) / (소형통상) 720억(36대×20억) / (대형통상) 200억(5대×40억) / (등기통상) 100억(5대×20억) / (집배순로) 292.5억(117대×2.5억)

### ② (수도권 물류시설 재건축) 약 5,192억 원\*

\* 대전집 등 지방권 13국 재건축 비용은 제외하고 수도권 집중국 재건축만 고려한 비용

- 동서울·수원·의정부 등 7개 수도권 집중국을 건립 35년 경과 시점에 현 청사와 동일 규모로 재건축 진행 가정

※ (동서울집) 1,780억 / (부천집) 928억 / (의정부집) 884억 / (고양집) 396억 / (성남집) 396억 / (수원집) 380억 / (안양집) 428억

- 재건축 설계·진행 일정 등에 따라 다년도에 걸친 예산 편성 및 자원 마련 등 사전적 준비 필요

## □ 우편차량 전동화 투자 필요

- (투자 필요 인프라) 기후위기 대응 및 수송부문 탈탄소 전환 정책에 따라 우편차량(이륜차 포함) 전동화 및 충전시설(우체국 전용) 구축 필요

- 우편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서 교체기준이 경과된 노후 우편차량(이륜차 포함)을 적기에 저공해자동차(전기차)로 교체 추진

< 우정사업용 차량 현황('25. 12월말 기준) >

(단위: 대)

| 구분 | 사륜차 |    |       |    |    |    |     |       |     |       | 이륜차    |
|----|-----|----|-------|----|----|----|-----|-------|-----|-------|--------|
|    | 승용  |    |       | 승합 |    | 화물 |     |       |     | 계     |        |
|    | 대형  | 중형 | 경형    | 대형 | 중형 | 대형 | 중형  | 소형    | 경형  |       |        |
| 내연 | 2   | 15 | 500   | 1  | 8  | 7  | 127 | 3,393 | 18  | 4,071 | 14,137 |
| 전기 | 1   | 1  | 1,166 | -  | -  | -  | -   | 71    | 321 | 1,560 | 16     |
| 계  | 3   | 16 | 1,666 | 1  | 8  | 7  | 127 | 3,464 | 339 | 5,631 | 14,153 |

- (시급성) 관련 법령\*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차량의 신차 도입은 저공해자동차(전기·수소차)로 구매·임차하여야 함
  -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노후경유차는 사고 예방과 대기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신규 차량으로 교체 필요
  - 다만, 집배환경(집배원 현장수요 등)과 관련산업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일시에 대규모 교체보다는 점진적 전환 검토
-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15,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등
- (제약사항) 자체 수입으로 비용을 충당하는 특별회계로 다량의 우편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한 사업예산 마련이 어려운 상황
  - \* 우정사업본부는 보편적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익성과 기업성을 겸하고 있는 정부기관이자 중앙행정기관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 □ 소요 자원 : 총 3,843억원('26년~'35년)

- ① (전기사륜차)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에 따라 도입 후 10년이 경과한 노후 내연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하는데 10년간 총 2,019억 원\* 소요

\* 경형밴 2,003대 × 29백만원('26년 505, '27년 69, '28년 272, '29년 954, '30년 156, '31년 10, '33년 17, '34년 19, '35년 1대) + 화물밴 3,344대 × 43백만원('26년 1,271, '27년 303, '28년 218, '29년 318, '30년 254, '31년 228, '32년 240, '33년 177, '34년 266, '35년 69대)

- ② (전기이륜차) 우편배달용 내연 이륜차 평균 교체 주기(약 5년)를 고려, 노후 내연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교체하는데 총 1,132억 원\* 소요

\* 이륜차 28,306대 × 4백만원('26년 2,881, '27년 2,881, '28년 2,881, '29년 2,881, '30년 2,881, '31년 2,881, '32년 2,880, '33년 2,880, '34년 2,880, '35년 2,880대)

- ③ (충전시설) 전동화 기반 마련을 위한 충전시설 설치에 총 692억 원\* 소요

\* 사륜차용 5,347기 × 5백만원('26년 1,776, '27년 372, '28년 490, '29년 1,272, '30년 410, '31년 238, '32년 240, '33년 194, '34년 285, '35년 70대) + 이륜차용 2,830기 × 15백만원('26~'30년 매년 566기)

자료: 우정사업본부